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6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23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7)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상정된 안건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 1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 1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 1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 2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7) … 2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 2

(10시07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다섯 차례 회의에서는 검사의 수사권 관련 6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체 1회 독 심사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쟁점별로 심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총 34개 쟁점인데 더 추가가 될 수 있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7)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10시08분)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제일 위에 있는 쟁점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 심사자료 1권, 2권은 저번에 보신 거고요. 이번에는 쟁점별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고 지금부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개정안에 담으실지 그리고 개정안에 담는다면 어떤 내용으로 담으실지를 결정해 주시는 축조심사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1번·2번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행은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찰청법상 중요범죄와 송치사건과 관련된 인지한 범죄 및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검사가 인지 등 직접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경찰, 공수처, 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결국 동그라미 1·2번을 합치면 일반적으로 송치된 사건은 관련 범죄 인지 등 보완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시정조치요구’나 ‘체포구속장소 감찰’, ‘고소인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특별한 송치사건입니다. 수사를 마치지 않고 올라온 사건들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동일성을 해하지 않은 범위’로 제한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에 특별히 송치된 사건의 지금 현재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가 달라져 있다는, 현행이 그렇게 돼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개정안 같은 경우는 김용민·박은정, 차규근, 김한규 의원안은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고 홍기원 의원안은 보완수사권 중에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겨 두자는 내용이며 정점식 의원안은 직접수사권의 일부까지 남겨 두자는 그런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기원 안에 보시면 친구대비표는 4페이지입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면 송치사건과 동일성, ‘동일성’에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동일성의 인정 범위 내에서 11개 범죄 및 4개의 사건유형 그리고 11개에 대해서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구체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고요.

2호에는 사건유형이라 해서 피의자 전부 또는 일부가 구속된 사건, 대령으로 정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이런 것은 사건유형으로 분류해서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직접수사권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공수처 소속 공무원, 사경—특사경 포함입니다—이 범한 범죄 및 이와 관련하여—‘이와 관련하여’입니다—인지한 사건 그리고 송치·송부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여기는 ‘직접 관련하여’라는 용어를 써서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려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검사가 사경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각종 권한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장치는 상호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정점식 의원안과 같이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경에 대한 협력의무를 강화하게 되면 현재보다 검사의 권한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홍기원 의원안과 같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한다면 전담 수사기관과의 업무 범위 즉 중수청이나 공수처 관할 범죄는 넣을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나 특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나. 송치사건과 동일성 인정 범위로 보완수사 제한하고 관련 범죄는 사경한테 요구를 하는 방안, 송치사건 및 관련 범죄 인지까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으로 인정하는 방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완수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준칙으로 세부 내용 위임하셔서야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번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6페이지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 그리고 사경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필요에 대해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한정돼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하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 가능하며 징계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표를 보시겠습니다.

모든 의원안에서 ‘정당한 이유’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내용,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는 3개월 내 원칙 그리고 좁게 기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1개월 내 원칙, 더 좁게 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플러스 1개월 연장 그리고 홍기원 의원안과 정점식 의원안에서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지정 그리고 홍기원 의원안은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청 그리고 직무배제, 징계요구와 관련해서는 김한규 의원안에 교체 들어가 있고요.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는 징계요구…… 이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다른 수사관서 지정 가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홍기원 의원안과 정점식 의원안에서는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는 1개월 내 징계처리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30일 내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라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방법이나 이행여부 관리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있고 홍기원 의원안에는 다른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고려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공수처법에서 따로 규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완수사요구 범위를 어떻게 하실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인지가 어렵게 된 만큼 송치사건의 범죄와 관련해서 다른 범죄 의심이 드는 경우에 보완수사요구로 가능할지를 명확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행 수사준칙에 보시면 ‘관련 범죄’까지 넓게 보완수사요구가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행 제재와 관련해서는 사경 교체요구나 20일 내 직무배제, 1개월 내 징계 처리는 고유한 수사기관의 인사사무입니다. 네거티브, 소극적인 방식으로 규율하시고 적극적인 개입 방식이거나 징계 관련 법령과 충돌 여지가 있으면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행과 같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를 삭제할지, 이행기간을 3개월, 1 플러스 1로 하실지,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을지 허용할지 이런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입니다만 재수사요청과 달리 보완수사요구는 횡수의 제한이 없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겠고 사법경찰관이 송치결정을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사준칙에는 사경이 송치결정을 불송치로 바꿀 수도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수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수청법을 부칙에 타법 개정으로 함께 명시…… 타법 개정으로 다시 개정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경찰청에서는 지금 실무를 고려해서 2개월 내 보완수사 원칙 그리고 1개월 연장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개정안들의 공통된 내용과 고려사항을 담아서 저희가 개정안을 예시했습니다. 위원들이 심사하실 때 개정안을 놓고 심사하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아서 잠정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항입니다.

검사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영장을 뺀, 1호·3호에 따른 송치사건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범위를 명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완수사요구 범위는 대령 수사준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2항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 및 내용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하고 필요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가능하도록 열어 놓았고요. 그리고 검사는 요구한 다음에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됩니다.

3항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서 특별히 보완수사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개월보다 짧게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4항입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있다’. 2 플러스 1입니다. 경찰청 의견을 따른 거고요.

5항입니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횡수 제한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를 이행한 후 송치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 뒤에서 보실 재수사요청과 다르게 차별해가는 부분입니다.

6항입니다.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보완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징계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7항입니다.

각급 공소청의 장은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님과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따라서 직접수사개시권 폐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의 경우에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약화, 수사기관 통제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구속 사건의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신구속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강제 처분이 수반된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는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헌법상 인권보호 절차이자 기소권의 남용을 막는 핵심 장치입니다.

구속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는 경찰에서 혹시 발생했을지 모를 위법수사, 강요된 자백, 부당한 구속 상태, 구속유지 필요성 등을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구속 송치 이후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수사 절차상 경찰의 위법수사가 드러나 구속을 취소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한 구속 송치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의자의 건강 상태 악화, 새로운 증거 발견 등 구속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도 구속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서도 구속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요, 구속 피의자와 피해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한 검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지 못한 채 사경 기록에만 의존해서 공판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앞으로 무죄 등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행 사건송치 및 구속 제도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속 제도 및 사건송치 및 신병 인치 제도가 모두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송치를 받아 구속을 할 수 있는 이유, 검사에게 신병이 인치되고 사건이 송치되는 이유 자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속 송치 사건에 대해서 사경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인치된 신병은 다시 경찰에게 인계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각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에 구속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속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보완수사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보완수사 폐지 시 직접심리주의에 역행해서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완한 후 기소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구조가 약화되고 형해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들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록에 없는 사실들을 제대로 발견하기 어려워 실제 진실 발견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폭력사건이나 강력사건과 같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인 사안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를 직접 만나 진술을 들어 볼 수 없다면 제대로 처분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고, 면담권 등으로 인해서 진술을 청취한 후에 이 내용을 다시 보완수사요구로 내려보낸다고 한다면 피해자나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절차적 복잡성이 더욱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소책임이 있는 검사가 적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대체 수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또한 보완수사 폐지는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사경의 영장신청에 종속시켜서 헌법이 예정한 검사 제도를 형해화하며 적법절차 원칙 및 청문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고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을 제한한다면 사건관계인이 검사를 면담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권리도 형해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 청문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 침해와 적법절차 원칙 위반 등이 문제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다음으로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보다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시는 여러 가지 개정안 예시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사유인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서 김용민·박은정 의원님 안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완수사요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고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에 유일한 증거 보완 방법이 될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는 삭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만을 보고서 형태로 송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행 결과의 통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경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제고해서 사건 평풍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이행 결과의 통보 방법 및 수리 절차를 개선해서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가 정리되어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야 하고 이행 결과 통보 전에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또한 부실 이행 시 수사 주체인 사경이 사건을 유지하면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수리 거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징계요구의 기속력 부여 및 징계요구 관련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에 대한 징계요구 시에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징계요구를 하도록 하여 기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검사가 징계

요구의 필요성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 담당자나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범죄 발견 시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가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검사의 수사권과 2번 보완수사요구권 관련해서는 종전에 개진한 의견 외에 특별히 보탬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심사자료 5쪽 제일 아래에 나와 있는 홍기원 의원안 중에 196조 4항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라도 의견을 구체적으로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드리겠고, 아니면 지금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으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말씀 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지금 생략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진술이 과연 증거인지 참고자료인지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임의제출이라든가 임의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받았을 경우에 필요한 절차들을 준수했는지에 관해서도 따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한 큰 원칙, 방향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존중해서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일단 검사의 수사권 관련된 부분은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 두면 그것 역시 직접수사권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마땅한 대안 없이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권을 남겨 놓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차관님,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거쳐서 제도를 설계해 달라는 요청을 총리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폐지를 전제로 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법무부의 입장은 폐지가 아니라 존치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정부의 큰 틀의 입장에 대해서 반하는 입장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절차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요.

○**김용민 위원** 아니, 차관님,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것을 굳이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총론적인 입장을 지금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입니까, 유지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장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보완수사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는 원칙하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제도 설계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너무 많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는 언급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셔서 법무부는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입장을 별도로 갖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여기 심사하고 있는 위원들도 그 부분이 너무 이상해요.

제가 계속 공식 기강을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해서 정리하신 내용을 왜 법무부는 계속 다른 의견을 내는가가 매우 이상하거든요. 왜 검사들은 항상 정해진 것을 따르지 않고 검사만 옳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입장을 표명하실 때는 폐지가 명확한 입장,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만 폐지됐을 때는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가요? 대검 의견 수렴하셨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대검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검찰의 입장을 고려한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무부에서 의견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어쨌든 간 그래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런 부분들을 입법할 때 고려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계속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질책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관님, 혹시 개인적으로 독립된 정치인이신가요? 아니시지요? 정부 소속 공무원이시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공무원입니다.

○**김용민 위원** 이재명 정부 소속 법무부차관이시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공식 입장은 따르셔야지요. 따르시되 이런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 검토해 달라, 참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음부터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구속제도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원칙적 폐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김용민 위원** 차관님 여전히 지금 제 얘기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잘 알겠고요.

○**김용민 위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우리가 따로 얘기를 할 테니 공식 입장을 그렇게 잡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질타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유지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속제도만 하더라도……

○**김용민 위원** 그리고 구속기간을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김용민 위원** 앞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차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 맞다, 다만 폐지했을 때 여러 가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입법할 때 참고해 달라라는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것은 총리께서 발표하신 내용 그대로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용민 위원** 차관님, 그러면 법무부의 입장이 뭐예요? 유지예요, 폐지예요, 뭐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절차를 주도하시고 입법권이 있으신 국회에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만 구속사건 하나만 가지고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

○**김용민 위원** 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점을……

○**김용민 위원** 구속사건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이게 지금 구속기간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 구속된 피고인 재판할 때 법원에서 몇 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나요, 심급별로?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심급별로 6개월·4개월·4개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구속해서 재판하는 게 수사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재판을 위해서 구속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수사기관에서 구속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서 구속하는 것일 거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다릅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공소기관에서 구속하는 것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구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수사권이 없으면 구속기간 20일이 있는 게 충돌한 다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댁니까?

공소기관이에요. 지금 차관님은 검사의 역할을 혼동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소기관이 본연의 업무예요. 본연의 업무를 자꾸 축소하고 왜곡하고 그 업무를 중시하지 않는 발언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검사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지금 가장 막강한 권한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충실하게 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를 하는 공소관으로서의 구속기간을 갖고 있는 것 혹은 필요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보완수사를 해서 가져올 때 필요한 기간으로 보는 것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굳이 수사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보완수사요구를 이행 하는 때는……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오면 구치소로 가지 않습니까? 신병은 구치소로 가 있고 원칙적으로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앞으로는 바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검사실에도 구속된 피의자를 불러내는 방식, 불러내서 편의 제공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이런 방식들은 앞으로 못 하게 차단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 구치소에 있는 구속된 피의자를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검찰청 직원이 가서 조사하나 경찰이 가서 조사하나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경찰이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서 수사하면 되는 거지요. 앞으로 검사실에 못 부른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렇게 똑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수사를 전제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번과 관련해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들으십시오.

그다음에 2번, 보완수사요구권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개정안 예시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좀 질문드려 볼게요.

먼저 197조의2 3항에 보면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는데 2개월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경찰청에서 2 플러스 1이 좋겠다고 의견을 줘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1개월이면 사실 보완수사를 이행하는 데 큰 문제가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체계가 좀 덜 잡혀서 경찰이 2개월을 요구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방식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가 거의 다 끝난답니다. 1개월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선언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해 주는 것이 경찰도 빨리할 수 있게 독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고소·고발 사건 수사기간 3개월로—제 법에는 2개월로 했지만—보통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완수사 2개월 플러스 1개월 연장해 버리면 이것 자체가 원래 수사 3개월 플러스 3개월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의견인데 이것을 1개월 이내에 마치고 1개월 연장하는 정도로 가는 게 타당하

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항 관련해서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문구는 굳이 안 넣더라도 해석상 보완수사요구는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재수사요청에서 1회에 한해서 재수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다 보니 그것에 대한 해석론이 나올 것 같아서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저희가 토론하면서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고 굳이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박아 버리는 게 오히려 더 현실에서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송치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집어넣으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지금 수사준칙에 보면 보완수사요구를 한 후에 사경이 불송치결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검사와 사경 간의 관계를 엄격하게 하고 검사에 좀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넣다 보니 검사가 필요하다면 그냥 계속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지도록, 종국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김용민 위원 이 부분은 경찰 얘기를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차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치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이것 지금 보셨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방금 확인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5항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지금 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요구의 절차와 불송치사건의 재수사요청이 서로 다른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고 또 그 절차의 복잡성이 생기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같이 이와 같은 절차의 당위성을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사건관계자들에게 법적 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송치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두는 게 더 타당하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횟수 제한 없이 보완수사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것도 제한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저도 그것은 해석상으로는 당연히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절차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제도의 큰 변혁이기 때문에 논란을 가능한 줄이도록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리고 아까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나서 검사에게 보고할 때는 종합수사결과보고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용민 위원 그러면 너무 또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피의자에게 ‘10월

2일 날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해서 확인해 오세요'라는 이런 단순한 보완수사요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또 종합보고서 방식으로 계속 해 온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송치사건이라는 것을 경찰에서 하게 되면 송치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면 범죄사실과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근거가 설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보완수사를 한 뒤에 기존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기존의 결론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사정이 수사 주체로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과를 보내고 있고 그것이 송치의견서의 범죄사실 판단과 배치되더라도 그 부분만 일치되지 않는, 정합성이 맞지 않는 보완수사요구를, 보완수사결과서를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체적으로 제도가 변경된다면 종합적으로, 일차적으로 송치의견에서 판단한 부분들이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하거나 또 증거 판단을 달리하게 된다면 그 부분들이 송치의견서, 종합보고서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수사를 이행할 때마다 계속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그 점은 1차 송치의견서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새로 작성하거나 하는 분량은 보완수사요구 내용만 반영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 부담이 많이 가중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직접 판단해서 나중에 최종 결정할 때 검사의 의견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기는 하는데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우선 김남희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는데요, 토론하시지요.

○**김남희 위원** 저도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폐지를 하면 너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폐지를 할 때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하실지 그 보완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열거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그런 논의들을 너무 안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어제도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해결한 문제라고 또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사회적 취약한 사람들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실제적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억울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갖고 와서 설명을 장시간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폐지됐을 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도 당연히 법무부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구속기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구속기간에

서 의미 있는 일이 뭔가 일어날 수가 없고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에 갔다 오고 이러면 그 구속기간 동안 의미 있는 범죄혐의를 발견해서 기소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수사권이 없어질 경우에, 그러면 대안은 뭐예요? 지금 궁금해요.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제도 설계를 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형사소송법이 대륙법계도 있고 영미법계도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약 80년간 형사소송법이 제정돼서 운영되어 왔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형사소송 절차가 검사의 최소한 수사권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난 한 일주일, 열흘 전만 하더라도 경찰관이 임의출석한 피의자에게 경찰서 밖으로 이동하라고 한 다음에 그 피의자를 긴급 체포해서 구속 송치된 사건을 그와 같은 긴급체포 절차가 적법절차에 위반된다고 해서, 구속 송치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절차 위반을 발견하고 석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 중의 일면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해서 이와 같이 설계돼 있던 많은 제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단기간 내에 정합성에 맞는 제도 설계를 하기가 무척 어려운 과제여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면담권 관련해서도 일부 입법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경우에 절차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솔직히 지금 증거능력의 유무라든지 절차에 관한 규정을 무엇을 따를지 잘 규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설계해 가지고 입법화하려는 노력을 해 본 바가 없고요. 이런 공백 부분이 지금 보완돼야 된다는 점을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남희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어쨌든 검사제도라는 것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검사가 수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길을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 이런 독자적인 길을 꼭 가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법무부 의견이요?

○**김남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아예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국가가 거의 없다 그런 설명을 들어 가지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설명드리는 차원은 검사가 앞으로 공소기관으로서, 즉 공소권과 소추권을 적정하게 제대로 사건 실체에 맞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설계되어야 될 것인데요.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 실체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륙법계에서는 수사지휘라는 제도가 유지가 되어 있어서 검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사법경찰관을 직접 지휘해서 그와 같은 실체 파악과 사안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미법계는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 사인 소추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의 국가에서도 검사의 수사 관여 내지는 증거 판단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분들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속사건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송치사건이 증거가 부족한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증거가 충분한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부족한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경은 이것이 특정 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겠습니다만 사건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이 있고 양형자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보완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이것을 사경을 통해서만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검사가 실체에 맞고 그다음에 그 사건의 특성에 맞는 결정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또한 지금 법왜곡죄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1차 수사기관의 기소 또는 불송치 의견을, 검사가 사경의 결론과 반대되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1차 수사기관의 판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수사권을 많이 확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경찰이 범죄가 인정된다고 한 송치사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완하고 또한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정을 확인해 보는 절차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되셨을까요?

그러면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차관님, 구속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도 현재 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은 구속기간의 제한 때문이에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건을 경찰로 그냥 보내는 방법이 있고 병존적 보완수사라고 해서 사건이 검찰에 있는 상태에서 일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한규 위원 그게 효율적이기는 하겠네요, 짧은 기간 동안 양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병존적 보완수사로 기록은 그냥 검찰에서 갖고 있고 기소 여부를 위한 수사 내지는 검토를 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특정 쟁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시키고. 그것은 만약에 보완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래야 될 필요성이 더 큰 것 같은데 아까 종합수사결과보고서가 통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 요구의 경우에, 그러면 그것은 기록을 경찰로 다시 넘기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시는 제도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게 되면 구속기간이 한정돼 있는데 병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검찰 내부에서는 계속 법리적 검토라든지 공소제기를 위해서 다른 부분도 검토하고 특정 사항만 넘기고 경찰이 보도록 하는 게 맞지, 종합수사결과보고서의 장점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병존적으로 사건을 조사 내지 수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그 경우는 다른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합수사결과보고서가 통보

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록 전체를 경찰로 다시 보내는 경우에 한정해서는 해 볼 수 있겠는데 병존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것 말고 다른 제도가 필요하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병존적 보완수사요구는요, 송치 과정에서 증거관계라든지 조사가 흠결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간략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 보내고 있고요. 그게 많이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송치사건에 대한 기록을 전체적으로 다시 복사를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등등의 절차적 번거로움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병존적 보완수사요구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완수사요구를 내려보냈을 때 그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이 종합적 보고서가 아니라 그 사항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사안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한규 위원** 그것은 하여튼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종합수사결과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요청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 부분도 제도 설계는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수리 거부 제도라는 것은 사건이 평평되지 않기 위해서, 사건이 평평돼서 왔다 갔다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받았을 때 ‘이것은 보완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깐 다시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제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리 거부 제도라는 것은?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것은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건 급한 것부터 먼저 보고 나중에 보고 그제서야 보완수사요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보완수사요구를 다시 할 우려가 있으니 그러면 시간도 지연될 수 있으니 그 시점에 바로 수리 거부 제도를 도입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전에는 검사가 사건기록을 받으면 단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리 거부 제도를 만약에 도입한다고 하면 즉시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해서 이 여부를 판단해 통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도 설계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수리 거부 제도를 도입한다면……

○**김한규 위원** 도입한다면.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 규정의 내용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문제되는 부분 뒷부분에 다시, 다른 쟁점에 들어 있는 건데 만약에 성폭력범죄나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면담하게 되면 이 이후에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경찰에서 또 진술을 받게 되면 이중적으로 조사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신데요.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면담권을 없애는 게 맞다라는 취지이신가요? 그건 또 아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그거는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추 여부를 결정

하고 지금 국가소추주의로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구형도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피해자건 피의자건 피해자는 본인의 억울함을 또한 피의자는 범행 인정 여부라든지 또한 본인의…… 본인도 억울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피의자나 피해자나 경찰에 가서 한 얘기 다 했는데 검찰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요즘은 공판중심주의니까 법원에 가서 또 하고 이런 절차가 발생해서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조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필요하면 영상녹화, 음성녹화를 해서 그거를 보고 신빙성을 판단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록으로 한정, 기록만 보고 심증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예외적으로 면담같은 부분, 사실조사같은 절차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다른 분들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보완수사가 있어야 된다는 논거로 주장하시는 거지 보완수사요구만 할 때는 이게 오히려 이중조사라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반대하시는 결론이 날 것 같아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김한규 위원** 그건 뒷부분에 쟁점이 따로 있으니까 다른 쟁점에서 그때 다시 한번……

○**법무부차관 이진수**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실에서 지금 검사실에 가서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고 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서 뒷부분에 다시 쟁점이 있는데 아까 법원행정처에서는 증거능력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 있어서 뭔가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 정도로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저희 쟁점별 심사자료가 서른네 쟁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1·2번 쟁점으로 거의 한 시간 소요되고 있어서 박은정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신 후에는 우리가 한 5분 정도로 일단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일단 보완수사요구 관련해서 ‘정당한 이유’ 규정을 제가 넣은 이유는 검찰의 수사 지연이나 수사 방해 목적의 보완수사요구, 그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정당한 이유’ 부분이 빠져도 저는 제도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TF안, 김한규 의원님 안에 긴급보완수사 요구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검사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이렇게 차관님이 말씀하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선진국, OECD 여러 나라들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법률상 규정한 나라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상 검사가 직접수사 하거나 특히나 보완수사—2차 수사이지요—를 하는 국가는 없다, 대부분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가지고 수사의 완결성을 기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들이 계속해서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 다른 나라도 수사한다 이렇게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70년 동안 검사들이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예컨대 예를 들면 직접수사를 선진국 다른 나라에서 하기는 합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예외적인 수사에 대한 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공수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또 국회법상 상설특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대한 수요……

우리나라는 수사 과잉이에요, 사실은. 검사들이 끝없이 정치수사, 선택수사 해 가지고 정치면 1면에 맨날 검찰의 수사가 나오고 그래서 검찰이 대선후보도 결정하고 국회의원 후보도 결정하고 이런 나라, 수사 과잉의 나라였던 거지요.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공수처나 아니면 상설특검 등을 통해서 수사 수요가 충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도 보완수사는 하지 않는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구속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구속사건은 일단은 영장 단계에서 검사가 경찰이 신청하면 보고 그다음에 구속이 충분히, 지금 거의 구속하기에 충분한 죄가 인정이 되어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고요. 또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사건은 죄가 돼, 증거가 충분해’라고 해야 영장이 발부가 되는, 법률가가 2명이나 사건기록 전체를 다 보고 구속이 되기에 충분한, 죄가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태에서 발부가 되기 때문에 구속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할 만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만일에 A·B·C·D·E 범죄사실 중에서 E 범죄사실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참고인을 더 조사해야 된다면 압수수색을 더 해야 된다면 구속기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검사가 판단하면 사건분리 결정을 해서 A·B·C·D만 구속기소하고 E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를 완결하도록 한 다음에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건에 반드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주장도 사실은 검토가 필요한, 좀 너무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차관님께서 어제 저희가 요청드렸는데 보완수사요구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고 아마 제출을 하실 텐데 빨리 신속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 가지, 어제와 여기 와서 내신 사례들이 아마 법무부에서 발간한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하실 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그것을 정할 때, 실질화 방안을 정하실 때 실제로 검사들이 하는 보완수사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올해 3월·4월 보완수사 했다는 통계자료를 보니까 수사보고의 형식으로 한 게 한 80% 정도 되고 참고인·피의자 부르고 영장 한 게, 영장은 한 0.1% 정도 했고 참고인·피의자 부른 게 한 5.7%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사가 실질적으로 보완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한 5.7%, 5.8%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들을 한번 보시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죄명별로 사례별로 통계적으로 확인하셔서, 보완수사를 검사가 하고 있는데 그걸 경찰의 보완수사요구의 형식으로 하게 되면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얼마나 그것을 충실하게 잘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완수사요구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시면 어떻겠는가, 죄명별로.

실제로 검사들이 하고 있는 보완수사 통계의 자료들을 좀 보셔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있을 겁니다. 제가 달라고 해도 법무부에서 안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보완수사요구 우수사례집도 있고 실제로 보완수사를 한 통계와 죄명별로 관련한 사례들을 분석해서 가지고 이걸 경찰에게 시켰을 때 충실하게 어떻게 해내게 할 것인가 그것을 실질화 방안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간단히 보완수사요구 관련해서 수사보고서가 한 80% 차지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검찰에서 중복 소환이라든지 당사자가 출석해서 진술해야 되는 번거로움 그다음에 지금 통신이나 여러 가지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관계인의 진술 청취를 반드시 조서 작성의 방법이 아니라 수사보고서 또한 유선 청취 그다음에 녹음 등등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가 다른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적 성격의 수사보고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병도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국민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입니다. 이 대원칙에는 당내의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증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직무대행의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 법안 중에는 김한규 의원님 안이 저희 원내와 그리고 당 정책위 또 법사위 간사가 모여서 여러 가지 보완하고 또 보충하고 만든 안인데 이 안도 좀 더 무겁게 존중되어서 토론해 주셨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검사가 피의자 혹은 피고인 혹은 피해자를 만나는 거

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조서화하는 것도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쨌건 사건관계인이 검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면 차관님의 걱정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에는 수사가 자백에 많이 의존했는데 그것이 많이 바뀌어졌지요. 자백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 저희 배울 때도 그런 얘기가 됐고 나중에 자백에만 의존하다가 객관적인 정황과 달라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워서 꼭 피의자·피고인을 만나서 어떤 진술 혹은 특히나 자백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건관계인, 특히나 피의자·피고인이 검사를 만나서 조사를 받는 건 좋되 그 진술이 예전만큼 증거능력도 당연히 없는 체계로 바뀌었고 또 그 진술에만 의존하면 실제적 진실 발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은 향후 형사체계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병 인치 장소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검사실로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러서 여러 가지 회유라든가 또 강압적인 모습들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달라져서 필요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인치된 장소에 수사관이 직접 가서 면담을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져야 되고 사실은 구치소나 교도소 안은 공개된 장소이고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 또 사실은 어떤 회유나 협박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공정한 수사 혹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수사·기소의 분리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한 헌법상의 권한 침해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영장신청을 관리감독 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계시지만 차장님,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당사자가 증거능력을 부인하면 그 진술조서는 다 휴지조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신문조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현재는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거는 그 진술을 담은 수사보고도 마찬가지로겠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다면 이 새로운 형사체계에서는 기존의 당사자의 진술이 다 증거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진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 법정에서 다 이루어져야 하고 혹시라도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수명법관을 통한 증거보전 절차라든가 혹은 수명법관을 통한 검증과 감정이 수명법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에도 맞다고 보여지고 이런 것 역시 만약에 저희가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만들면 수사기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저한테……

○소위원장 김승원 예, 질문드리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사실은 법원도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바로 법원에다가 이런 형사소송법에 있는 증거 수집 절차라든가 혹은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은 청구권자가 검사에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 참, 피고인도 있겠지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검증, 감정, 증거보전에는 피고인도 청구권자로 되어 있을 것이고 검사도 물론 청구권자로 돼 있고.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소위원장 김승원 사법경찰관이 청구권자로 되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법정에서는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지요? 청구권자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건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명법관에 의한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이라든가 또 절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연구 검토도 있어야겠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는 여기까지 토론을 드리고요.

아까 박균택 위원님께서 손을 드셨지요?

○박균택 위원 안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김남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5분 시간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수사 과잉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 사후 견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상설특검에서 하는 수사는 중대한 범죄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고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인데 정치검찰 문제를 민생범죄 수사의 문제와 섞어서 해결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공소처와 중수청과 특검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다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수사기관 간에 상호 견제가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충분한 견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이게 문제의식이 출발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2개의 기관이 중복해서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과잉이 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 같은 것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좀 더 강력하게 견제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 설

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는 전혀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한 수사를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확실한 견제장치가 마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검사가 하는 보완수사라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사실 확인이나 진술 취취 이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검사가 이것을 할 수 있게 열어 주는 보완책 같은 것은 없나 그런 고민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검찰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태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돌이켜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과거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빨리 내려놓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유지하면서 사법통제 기능에 집중한 것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협력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건에 관련해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재수사요청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일부 보완수사를 하는 형태로 교차검증을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소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면담제 등등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면담제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검사가 면담제를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제도를, 정말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이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적법절차에 따라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또한 여기서 진술한 내용들에 대한 증거능력이라든지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거능력 등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더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을……

○**소위원장 김승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수사지휘에 이를 정도로 뭔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완수사를 통해서 교차검증을 하도록 했는데 보완수사가 없어진다고 하면 적어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은 한계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뭔가 보완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법무부차관 이진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은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수사지휘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 견제장치는 3번부터, 세 번째 쟁점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혹시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박군택 위원 제가 아까 사전회의 때 반도체 투자 관련된 토론회에 불가피하게 참여하느라고 같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위원 아직 논의 안 했어요.

○박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질문해도 되는지 여쭙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쭙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쟁점 세 번째부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그러면 아까 8페이지 같은 경우는 김용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개월 이내’로 저희가 수정해서 반영하겠고요. 일단 5항은 그냥 두는 형태로 두고……

○김용민 위원 추가 논의를 좀 더 해 보지요.

○박은정 위원 5항 이것은 시행령으로 가도 되고 법에 이걸 이렇게 할 거냐는 건, 그 말씀은 못 들었네요.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횟수 제한 없이’라는 것들이……

○박은정 위원 이런 법체계는 좀 이상하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이건 빼고 그렇게 다시……

○소위원장 김승원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김남희 위원 그런데 송치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김용민 위원 아니, 앞의 것, 횟수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고……

○소위원장 김승원 추가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3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다음, 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에 보시면 현행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피의자 등의 신고 또는 검사의 인식에 따라, 먼저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 송부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요구로 가는 거고요. 시정조치요구 하게 되면 사경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여기에도 정당한 이유가 들어가서 이행해야 되고요. 다음에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 이행되지 않으면 그때 사건송치요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항 보시면 수사 과정에서 정말 사법경찰관리가 법령 위반 등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요구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신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달리 여기서의 징계요구는, 앞에서 보완수사요구에서의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는 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거고요 시정조치요구권에 있는 징계요구는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보적인 인사 제재로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신고인을 제한하자, 신고인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해자측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시정조치요구는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 사건송치에 대해서 빼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안에 있고요.

다음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징계요구는 빼고 직무배제·교체로 가자, 다음에 직

무배제, 교체, 징계요구 모두 다 이렇게 가자는 내용들이 있고, 김한규 의원안 같은 경우는 피의자한테만 안내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에도 안내를 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려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조항은 피의자를 위한 게 중심입니다.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피해자도 있지만 피의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김한규 의원안같이 피의자를 빼고 피해자로 가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수사기관 이송 같은 경우 수사 과정 중 인권침해 등이 발생해서 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았고 송치받은 후에는 다시 보완수사요구 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수사관서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에 보완수사요구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고요. 이렇게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사경이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완수사요구 절차에 따라서 직무배제나 또 징계요구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정조치요구 조항에서 징계요구는 수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한 사경에 대한 인사 제재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징계요구만 두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안에 있는 것처럼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에게도 안내를 하자 이런 부분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11페이지에 개정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5항까지는 현행과 같이 있습니다.

사경 같은 경우는 4항 보시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조치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됩니다. 시정조치요구 사항에는 되게 광범위한 행정적인 조치도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5항에 따라서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고 사건은 송치해야 됩니다.

6항이 새로 들어갑니다. 5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197조의2—보완수사요구입니다—보완수사요구 절차에 따라서 사경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새로 들어간 내용입니다—해당 경찰관이, 사경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항입니다.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징계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8항입니다.

사경은—현행 조문에 있는 겁니다—피의자한테는 피의자 신문 전에 이러한 사항을, 구제 절차를 알려 줘야 되고요.

9항,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사경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이런 피해자측에 대해 이런 구제절차 안내를 해야 되고요. 다만 사건에 따라 고소·고발이 없어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사례일 때는 절차 안내를 생략할 수 있

도록 단서를 두었고요.

10항입니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건기록 송부요구 여부 등 기록 송부를 받았
다, 시정조치요구를 했다 이런 절차적 사항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내용을 신설하였
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계요구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또한 시정조치요구의 요건인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의 사유에 비취 봤을 때 경찰관의 직무배제
와 교체요구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절차와 관련해서 검사가 위법 수사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송치요구,
직무배제, 징계 요구 등 절차를 시의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수사 담당자나 피의자, 사
건관계인의 의견·진술 청취 등의 확인 절차가 신설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견 좀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는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니까요 그래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예시한 조항도 참조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저도 수석전문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제도는 원래 피의자를 염두에
둔 제도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을
피의자 외…… 지금은 사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라 굳이 제 안처럼 바꾸지
않더라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들도 다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현행대
로 두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개정안대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이런 분들한테도 신청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방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신고 대상을 피의자나 피해자 이쪽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
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법무부에 의견을 여쭙보고 싶은데
요, 11페이지에 보면 1항에 신고 또는 인식한 경우에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
까? 이 신고 대상은 지금처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누구나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한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사건관계인 같은 경우에 수사 당사자로서 이의제기를 하기가 평
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 봤을 때 현행 규정 유지가 바람직하
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너무 넓은 것 아니에요, 신고자에 제한이 없으면?

○**김한규 위원** 현행에 그렇게 돼 있는 거긴 하지요.

○**김남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재량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신고면 당연히 그것 받을 이유가 없지요.

○**김용민 위원** 저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김용민 위원** 이것은 그냥 질문보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검사와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관계면서 상호 견제 그리고 상호 대등한 기관으로서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게 검사가 수사경찰에 대해서, 사법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장치와 조치요구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반대로 수사기관이 검사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논의가 안 되고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계속 논의돼 왔던 영장청구와 관련해서 검사가 함부로 기각하고, 특히 검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 기각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공소청범에는 사건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일부 열어 둔 것은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을 같이, 이번 법에는 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실제 실무가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법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담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호 대등한 관계가 상호 견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개정안 예시에 6항 부분이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치받은 검사가 그러니까 사건 송치, 5항에 따라 송치요구 할 수 있지요, 송치받으면 상급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넘어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검사가 송치받은 상태에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지금은 검사가 사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완수사요구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 구조인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김용민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그러니까 100을 수사의 종결로 봤을 때 한 30 정도 했을 때 이런 시정조치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70에 대해서 수사를 보완수사요구의 방식으로 다 하는 것이 타당하냐, 현실적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 번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차관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완수사요구의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예를 들면 상급 관청이나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검사가 송치받아서 다시 송치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인 것이예요.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이 규정상으로는 시정조치요구를 한 뒤에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송치를 받은 것이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해당 관서에 다시 보내는 것이 동일 기관에서 담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급 기관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으로 규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긴 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완수사요구의 개념이 아니라 사건을 다시 아예 넘겨서, 수사가 한 3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이게 기소 여부도 판단할 수 없는 정도의 수사였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를 하게 아예 통으로 넘겨 주는 게 맞지 않냐, 표현이 송치가 됐든 이송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완수사요구의 방식으로만 하다 보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보완수사요구의 방식과 함께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 등으로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말씀을 좀 차관님께 드리면 같은 경찰서 안이라면 굳이 이송·이첩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급 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다른 수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건을 검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건을 중수청으로 이첩하게 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김용민 위원** 아예 그러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차관님은?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본적으로는 시정조치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치받은 것을 절차상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수사요구나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이나……

○**김용민 위원** 이것은 검사가 한번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수청 등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용민 위원** 절차상으로는 검사가 송치를 받아서 일단 검토를 하고 검토 내용에 따라서 취하는 조치로 이렇게 구별하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한번 논의가 필요해서요 일단은 신고자를 제한 없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검사는 일단은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무조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보내라고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판단을 하다가는 또 본인도 책임을 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신고 제한 없이 이렇게 들어온 경우에 일단 사건기록 보내라고 해서 등본을 받고 그걸 검사도 하게 되면 검사도 일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등본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업무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사실 이런 걱정은 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안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의견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법경찰관이라든지 피의자 담당자에게 의견 진술, 의견 청

취 절차를 마련하게 되면 등본요구가 필요한 것인지 않은 것인지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조항은,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취지는 여기 담겨져 있지는 않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개정안 예시에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정확하게 어떻게…… 차관님,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개정안에서……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검사가 이런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의 의심되는 신고를 받았을 때 여기서도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의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사법경찰관이라든가 혹은 신고자에게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말씀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조문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완결성을 높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제공을 해 드리든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지금 이걸 차관님이 계속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한 부분이라서 전반적으로 해당 특정 조문에 하나하나 넣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만 어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를 꼭 여기만 넣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건이 송치되거나 불송치사건이 송부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정조치요구라고 하는 신고가 접수된 등의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정으로 해야 된다는 점도 공감을 합니다만 시정조치요구에도 그와 같은 절차의 근거 규정은 필요하지 않은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큰 사건 수사할 때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데 예컨대 회사 오너라면 자기 직원 시켜서 이것 신고를 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걱정되는 게 검사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진짜 맞는가 하고 사건기록 등본을 요청할 것이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검사가 기록 검토하거나 혹은 검찰수사관이 기록 검토할 때 그게 수사의 기밀의 외부 유출이라든가 예컨대 압수수색 대상이 추단된다든가 그런 것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사실 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가 기본적으로 등본을 요구하는 등 너무 엄격하게……

○소위원장 김승원 전부 다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복사해서 다 갖고 오라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다 갖고 오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신고 내용에 비추어 봐서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너무 경직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주체로서 대부분의 사건의 수사를 진행할 때 이와 같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특히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 사건 수사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고 접수가 사실상 접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내용에 맞게 검사가 내용을 판단하고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담당 수사 경찰관으로부터도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신고 주체나 피의자 내지는 고소·고발인 등 피해자로부터 그런 의견진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정조치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건기록 전부 등본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업무 부담도 크고 수사 기밀성에도 반하는 것 같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되긴 하는데 한번……

○박은정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규정이지 않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실무상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경찰의 수사 과정이라는 게 항상 적법과 위법으로 이렇게 양분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하튼 증거에 대한 충분한 수집 내지는 부실 수사, 부족한 수사,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모호한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를 보완수사요구라든지 이런 것의 실효성 방안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수위에 이르지 않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가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있는 제도에 좀 더 피의자나 아니면 피해자 사건관계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다시 한번 조문 정리는 차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권과 관련된 겁니다.

현행부터 보시겠습니다. 경찰의 송치결정에 다른 수사 결정—불송치결정이나 수사중지 결정이지요—그런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검사는 문서로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수사준칙에 많은 세부 사항이 규율되어 있는데 수사준칙 내용을 보시면 검사는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을 해야 되고 새로운 증거 등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90일 이후도 가능합니다. 재수사요청은 1회에 한정돼 있고요 검사는 고소인 등에게 재수사요청이 있었다라는 통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경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하고 재수사한 후에 송치결정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기존 불송치결정을 유지한다는 결과서를 통보해야 됩니다.

경찰이 재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 기존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계속 위법 또는 부당이 지속되고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는 경우 결과서 통보일부부터 30일 내에 시정조치요구 절차에 따라서, 앞에서 보신 시정조치요구 절차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건송치 가능하도록 수사준칙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들 보시겠습니다.

지금 개정안들에는 현행 조문이 2개 항목으로 간단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3개 의원안 공통적으로 검사는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되고 검사는 90일 내에

요청을 해야 되고 90일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서면으로 검사는 요청해야 되고 요청할 때에 받은 서류와 증거물들을 경찰에게 반환하며 사경은 요청을 받은 날 3개월 내에 재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보다 짧게 기한 설정이 가능하고요.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그 밖에 재수사 후에 사경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안에는 그에 더 나아가서 수사준칙과 같이 사건송치요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수사요청에 수사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걸 불이행하면 검사는 직무배제·교체·징계 요구 이런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서영교 의원안에서는 이런 불송치결정할 때 다른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이 재수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으면서 그 재수사기간을 국수본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려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사준칙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할 때에는 법률적 상향이 맞는지 선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실무 사항은 위임을 하시면 되고요.

김한규 의원안 같은 경우는 재수사 후에 다시 불송치결정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약간 실무와 다른 점이 있어서 굳이 법문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14페이지, 지금은 재수사요청입니다. 약하게 검사의 요청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들 공통적으로 징계·인사제재 요구까지 들어가서 권한이 세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처럼 ‘재수사요구’로 조 제목을 바꿀 필요가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 예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사요구’로 조 제명 바꿨고요. 제245조의5제1항제2호는 불송치결정 하는 경우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경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할 때입니다, 위법·부당할 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검사가 1항에 따라 재수사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아니면 사법정보시스템으로 해야 되고 이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3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90일 이후에도 재수사요구가 가능하고요.

4항에 보면 사경은 이런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됩니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서 긴급한 경우에는 이보다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5항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결정이 변경되는 거지요, 이럴 때에는 결정을 변경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6항입니다.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는 다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수사요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우 검사는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90일이 아니

라 30일로 줄였습니다, 두 번째 재수사요청이라—3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되고 사법경찰관은 똑같은 방식으로 3개월 내에 재수사를 마치도록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항입니다.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상의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개정안은 현행 불송치제도를 전제로 재수사요청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수사요청 제도가 경찰이 일차적으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조사를 할 수 없고 기록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효성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의 결론이 타당했는지,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증거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 그 종결은 검사가 할 수 있도록 전건송치 제도의 도입 또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의 신청으로 송치받을 수 없는 인지 사건, 중수청 범죄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송치 제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수사요청 횟수 제한 관련해서 위법·부당이 시정될 때까지 재수사요청이 가능하도록 횟수 제한을 폐지해서 재수사요청을 충실히 이행할 최소한의 유인을 제공하고 혐의 유무가 불명인 채 암장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재수사 결과 통보는 재수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통보만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불송치결정을 유지할 경우 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송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서 현재 형식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만 통보해서 실질적 교차검증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이행, 부실 이행 시에 보완수사요구에 준해서 통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무배제 및 교체요구권 외에도 징계요구를 포함한 제재 수단을 보완하고 요구의 실효성을 위해서 기속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법원행정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먼저 간단한 기간, 전문위원님께 여쭙보겠는데요. 이게 같은 조항 안에 90일, 3개월, 30일, 1개월이 다 들어가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구속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하는 게 정확해서 맞는데 이거는 동일하게 그냥 90일을 3개월, 30일을 1개월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제가 수사준칙을 그냥 가져오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 못한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다음에 법무부에 문의드리겠는데요. 지금은 90일 이내에 재수사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재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특별히 하는 조치는 없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은 결론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경우에만 재수사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른 조치는 없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 기록을 보시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검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송치사건에 비해서 기록을 검토하는 집중도의 정도라든지 투입하는 시간, 역량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한규 위원** 이의 신청을 한 사건들은 다 보실 테고. 그렇겠지요, 당연히? 열심히 보시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건 송치사건이고 그 사건의 혐의 유무에 대해서 검사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혐의의 유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요. 재수사요청 사건은 사경의, 방금 말씀드렸다고 결론의 위법·부당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설사 부족한 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위법·부당 수준에 이르지만 않는다면 검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소위 전전송치하고 지금의 재수사요구하고 실질적인 차이점이 뭔가요? 위법·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차이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그 차이의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기록상에, 사경이 불송치한 사건의 기록은 기소할 수 없는 내용으로 기록이 편철되어 있는 경우일 것이고요. 명백하게 증거가 인정되는데 그거를 불송치사건으로 송부하는 사법경찰관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문제는 기록에 다 현출되지 않는 사정이라든지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 등이 있을 텐데 지금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이 결론이 기소할 수 없는 상태라고만 한다면 지금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김한규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거는 부당한 결정일 텐데 그건 재수사요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전전송치 제도를 다시…… 과거에 경찰에 무혐의 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두기로 결정한 건데 사실은 또 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전송치를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고요.

저는 어떻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무래도 집중도가 적게 느껴지고 일반 변호인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잘 안 봐 줄 거다라는 우려는 있거든요. 그리고 안 봤을 거다라는 의심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법에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한 사건기록이 송부되면 3개월 내에 검사가 의무적으로 이케 재수사요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부분은 재

수사요구를 안 한다고 딱 결정을 하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다고 판단이 들고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만들면 최소한 검사가 의무적으로 봤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신뢰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지금은 선별적으로 제목만 대충 보고 아니면 중대범죄로 봐서 관심 갖고 그것만 붙잡고 그중의 일부만 재수사요구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게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남기게 하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제도가 불송치 기록에 대해서는 90일간 검찰청에 있다가 재수사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가 결국 반환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김한규 위원** 그런데 그거를 못 믿겠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안 보고 그냥 돌아가는 건지, 한 번 보고 재수사요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건지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도 지어지는 거니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서는 보완수사요구 유무에 대한 결정을……

○**김한규 위원** 아니, 재수사요구 유무.

○**법무부차관 이진수** 재수사요구 유무에 대한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검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내용의, 어떤 수단과 절차가 같이 수반이 되어야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수사요청 제도는 기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고 있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에 대한 위법·부당만을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만 집어내도록 하는 구조가, 증거 부족이라든지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에까지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점검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반대 의견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검사에게 그런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도 마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지금 차관님께서 불송치 후 재수사요구 후에, 일단 통보할 경우에 사건 기록하고 증거물이 다시 송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박은정 위원** 의견 내셨는데 그거는 단서 조항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수사를 얼마나 했는지 검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서 조항에 넣어서 이거는 다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위원님, 지금 현행 245조의5에 검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록물을 반환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들어 있어서……

○**박은정 위원** 그게 아니고 재수사요구를 했을 때, 재수사요구를 해서도 여전히 불송치 의견일 경우에 지금 법무부차관님께서 그런 경우에도 재수사한 결과를 다시 기록을 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지않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기록이 들어가 송치될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통보만 할 경우에도, 그러면 6항에 단서가 들어가야 될까요?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6항에 들어가야지요.

○**박은정 위원** 6항 단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서에 그 부분이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법무부와 의논해서 문구 추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지금 사실은 전건송치에 대해서 여성폭력 피해자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차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사가 부실하면 그 부실한 수사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뭔가 근거가 없는 이상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서 사실 부실수사 같은 경우에는 위법이나 부당에 해당하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검찰이 지금 보완수사도 못 하게 될 상황에서는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더블 체크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수사가 위법·부당인지 여부만 판단하게 넘겨 버리면 그때 발생하는 부실수사로 인한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열심히 수사를 안 했다는지 수사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전건송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 너무 큰 절망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열심히 호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경찰의 판단으로 이거는 범죄가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내려 주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실 경찰이 불송치로 하려면 당연히 자기가 보기에 범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송치를 했겠지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불송치를 했겠어요? 당연히 충분한 자료도 없고 충분한 증거도 없고, 검사는 보완수사도 못 하는데 그러면 이런 피해자들 어떻게 보호하냐는 말이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제기가 되고 현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건송치와 재수사요구가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면 저는 이것을 과연 피해자들이 잘 납득할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가 만약 폐지가 된다면 적어도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더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든 법에 잘 녹여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나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

해서는 우리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한 가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잠깐만요.

심사보고자료 쟁점 11번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자 확대 그다음에 쟁점 12번,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제기권 신설 그다음에 그 뒤로 가면 또 재정신청 대상 확대, 신청 사건 절차 개선 등등의 절차가 또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김남희 위원님께서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토론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방금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만 설명을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거의 12시가 됐는데, 그러면 한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사건이 송치되어서 검사가 다시 검토하는 경우와 불송치사건이 송부가 되어서 결론의 위법·부당만을 점검하는 경우가 차이가 굉장히 큼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검사가 2차적으로 수사 과정을 점검하고 그 결론의 타당성을 보고 또한 지금 설계하고 게시는 예컨대 당사자 면담권이라든지 사실관계 조사권을 통해서 이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트랙으로 사건이 가는 것과 불송치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검사가 90일 동안 기록만으로 검토한 다음에 재수사요구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부만을 결론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과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점 그다음에 그 수사의 결과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무튼 대원칙 방향은 일단 저희 민주당에서는 정해졌는데, 그런데 또 구체적인 절차·제도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70년 만의 형사사법 개혁이니까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는데요. 송구한 부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위원님들과 또 기관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오후는 본회의 경과를 봐서 계속 심사할 것인지 여부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내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전일 심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6인)

김남희 김승원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임시회의록